

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 47 조 (장학금)</p> <p>① 각 과정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가사가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총장이 행한다.</p> <p>제14조(수업일수 및 방법)</p> <p>수업일수는 매학년도 <b>32주</b> 이상(매학기 <b>16주</b> 이상)으로 한다.</p> <p>제27조(이수학점)</p> <p>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<b>16주</b>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5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 47 조 (장학금)</p> <p>① 각 과정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가사가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<b>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</b>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총장이 행한다.</p> <p>③ <b>장학금의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b></p> <p>제14조(수업일수 및 방법)</p> <p>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<b>30주</b> 이상(매 학기 <b>15주</b> 이상)으로 한다.</p> <p>② <b>총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b></p> <p>③ <b>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블록수업,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b></p> <p>제27조(이수학점)</p> <p>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<b>15주</b>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5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</p> <p>부칙</p> <p>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